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08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현기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이봉준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최민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 내 북한이탈주민은 약 6천여 명(전국 거주 인원 중 20.3%)으로,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.
-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,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우선 구매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함(안 제1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사회적응”을 “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”으로
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
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
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정착과정에서의 정서·심리적 상담 및 지원

3. 직업훈련, 취업알선, 취업 후 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지원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해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 생산한 물
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

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의5
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.
1. 언어·기초학력 및 <u>사회적응</u>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	1. ----- <u>지역사회</u> <u>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</u> ---- -----
<u><신 설></u>	2. <u>정착과정에서의 정서·심리</u> <u>적 상담 및 지원</u>
<u><신 설></u>	3. <u>직업훈련, 취업알선, 취업 후</u> <u>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지원</u>
2. ~ 4. (생략)	4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)
5. <u>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</u>	<u><삭 제></u>
6. ~ 8. (생략)	7. ~ 9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)	제12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시장은 법 제17조제5항 및</u> <u>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</u> <u>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</u> <u>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</u> <u>되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</u> <u>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	② <u>시장은 법 제17조의5제2항에</u> <u>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</u> <u>련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</u> <u>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</u> <u>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</u> <u>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③ (생략)	1. <u>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</u> 2. 「<u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3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서 및 심리적 상담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,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¹⁾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**[기추진 사업]**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지원의 범위)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6,365명('25.1월말 기준)
 - 50대(1,718명, 27.0%), 여성(4,391명, 69.0%), 양친·노원·강서구에 주로 거주(2,744명, 43.1%)

계	0~9세	10~19세	20~29세	30~39세	40~49세	50~59세	60세 이상
6,365	2	107	731	1,238	1,296	1,718	1,273

- 지원내용 : 의료·교육·돌봄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, 취업연계교육 등 자립지원
- 소요예산 : 4,372백만원(일반 2,435, 기금 1,937)

□ 추진내용

- **(근속장려금)** 탈북민 근로의욕 고취 및 근속유도를 위한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
 - 근속기간별 근속장려금(600~1,200천원, 6개월분) 지원(26명) → 지원기간, 인원 확대(60명)
 -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개정('25.2.)*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절차 협의 중('25.1.~)
 - * 주요 개정사항 : 지원범위 구체화(돌봄 및 장기근속 지원 등), 지원대상 확대(북한이탈주민 가정)
- **(취업알선)** 구인난 직종 공략 및 기업수요 맞춤형 채용 과정 운영
 - 마을버스·법인택시 기사, 간병인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직종 발굴 및 취업 알선
 - 한국IT교육재단(공동훈련센터)과 협업, 채용연계 직무교육 개설시 북한이탈주민 우선 배정
 - ※ 공동훈련센터 : 고용노동부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(서울 5개 지정·운영)
- **(자격증)**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
 - 운전면허 지원 확대('24년 1종 → '25년 1종2종), 사회복지분야 등 자격증 추가 발굴 지원

자료 :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발췌